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중전의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,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」이 제정(법률 제21446호, 2026. 3. 5. 공포, 2026. 7. 1. 시행)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국가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정원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5. 29. ~ 6. 2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
과 같이 신설한다.

2. 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제주
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)의 기획업무담당실장
3. 통합특별시의 기획업무담당담당관
4. 통합특별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)의 농업
기술원장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(제3조 관련)

구 분	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·부지사	기획업무담당 실장	기획업무담당 담당관	농업기술원장
서울특별시		가등급		
전남광주통합특별시		가등급	나등급	나등급
부산·대구·인천·대전·울산광역시	가등급	나등급		
세종특별자치시	가등급	나등급		
도, 강원·전북특별자치도	가등급	나등급		나등급
제주특별자치도	가등급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)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및 도의 기획업무담당실장</u>	2. <u>특별시 · 통합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도 및 특별자치도(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)의 기획업무담당실장</u>
3. <u>도의 농업기술원장</u>	3. <u>통합특별시의 기획업무담당담당관</u>
<u><신 설></u>	4. <u>통합특별시 · 도 및 특별자치도(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)의 농업기술원장</u>